

국·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 고지서 공시 송달 공고

「국유재산법」 제72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규정에 따라 무단점유 중인 국공유 재산에 대하여 변상금 부과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수취거절 등의 반송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 송달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0일

경 기 도 지 사 인



1. 공 고 기 간 : 2020. 10. 20. ~ 11. 4 (15일간)
2. 공고 및 게시장소 : 경기도 홈페이지 및 공보, 전국 시군구 게시판
3. 근거법령 : 국유재산법 제72조(변상금의 징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변상금의 징수),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57조(변상금부과)
4. 공시송달 대상 및 위반내용

대상	재 산 의 표 시			점유면적 (㎡)	위반내용	기간
	소 재 지	지목	지적(㎡)			
양*록	화성시 장안면	공장	23,483.2	592.8	국·공유재산 무단점유	'18.5.8.~'20.6.21.
(주)건웅	금의리 759-12	용지				'20.6.22.~'20.8.20.

5. 부과금액

대상	주소	부과금액	부과일자	납기일자
양*록	인천광역시 남동구 문화서로28번길 13-19, ***호 (구월동)	21,784,000원	2020.10.08	2020.12.07
(주)건웅 대표이사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283, 비동 ***호(청천동) 부평우림라이온스밸리	1,716,010원	2020.10.08	2020.12.07

6. 공시 송달 내용 : 국·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 고지

- 가. 위 공고기간 내 변상금 부과 고지서를 경기도청 투자진흥과에서 납부 고지서를 발부받아 시중은행 등에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청 투자진흥과(☎031-8008-27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본 서류가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